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 위한 콘텐츠 프로젝트금융 연계지원 업무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콘텐츠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간 연계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우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위하여 “콘진원”과 “중진공”간 상호 협력 할 사항을 정하고 분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조의 범위)

“콘진원”과 “중진공”은 우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콘텐츠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협조의 범위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관련 법령 및 각 기관의 내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1. “콘진원”은 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콘텐츠기업들에게 “중진공”의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에 대하여 홍보하고, 참여 콘텐츠 기업 중 융자희망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한다.
2. “중진공”은 1호의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을 지원한다.
3. “콘진원”은 2호의 투심위 개최시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중진공의 요청시 콘텐츠 장르별 전문가를 사업타당성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4. “콘진원”은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 기업 중 융자 희망기업을 추천시 업체의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득한 후 “중진공”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이를 2호의 사업타당성 평가시 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3조 (성실한 상호협력)

“콘진원”과 “중진공”은 제2조에서 정한 분담업무를의 수행을 위해 상호간 성실하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 (세부 추진계획 수립)

“콘진원”과 “중진공”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협조의 범위에 대한 세부업무는 실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시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콘진원”과 “중진공”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권리의무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콘진원”과 “중진공”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석)

1.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제8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콘진원”과 “중진공”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콘진원”과 “중진공”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0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홍 상 표

홍 상 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 철 규

박 철 규